

## 직원 채용공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 I 응시자격

#### 가. 선발 예정 인원

| 직 위                     | 임용 직종   | 채<br>예<br>정<br>인<br>원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
| 병동도우미                   | 운영직 계약직 | 3명                    | 진료처 간호부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
| * 합격 배수 :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         |                       |         |              |

#### 나. 응시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취업규칙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2)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3) 성별 및 지역 : 제한 없음

## 다. 담당업무

| 직 위   | 담당업무         | 비 고 |
|-------|--------------|-----|
| 병동도우미 | • 병동 지원 업무 등 |     |

## 라. 보수 및 근로조건

| 보 수             | 근로조건           | 비 고 |
|-----------------|----------------|-----|
| 의료원<br>보수규정에 따름 | • 3교대) 근무표에 따름 |     |

## Ⅱ

##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다. 3차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신체검사 판정 기준)

\* 채용 신체검사는 지정병원(김천의료원)에서 받을 경우 의료원에서 부담합니다.

## Ⅲ

## 채용 일정

가. 접수기간 : '22. 12. 7.(수) ~ '22. 12. 19.(월)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 기간 내 등기소인일까지 인정

1)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2) 접 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총무부 (우 : 39579)

나. 시험 일정

1) 서류전형 : 개별 통보

2) 면접전형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3)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Ⅳ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본원 소정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원 소정 양식)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마. 취업지원 대상자 및 보훈 대상자, 장애인 증빙서류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에 가산점이 있으며,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 취업 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 의사상자 : 만점의 5% 또는 3%
- 바.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사. 응시원서는 반드시 타이핑으로 하되, 임의로 응시원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수기 작성 금지)
- 아. 본원에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인사 담당 (☎054-429-8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